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의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안 별표 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수수료 무료로 변경

나. 현행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및 상위법에 맞도록 개선 (안 별표 1)

다.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 부과기준 ‘MB(메가바이트)’에서 ‘무료’로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

- 2)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수수료 징수 관련 부서 및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나.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다.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열람(지적관계 제외)			
1)	기본료	시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건	400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바.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건	800	전자민원 (인터넷) 신청시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5,000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나.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다.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마.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 30,000 개인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2. 농수산 관계				
가. 내수면 어업 관계				
1)	낙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6)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8)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1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1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1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1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1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1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2,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000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2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23)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다.	농정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라.	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2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다.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라.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건	10,000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파.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4. 건설 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삭제>			
다.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마.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바.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사.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아.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차.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거.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러.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 문화.예술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전국적통일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차.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카.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타.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파.	영화업 신고	1건	20,000	
하.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거.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너.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더.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6. 보건소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9.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 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서 관련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안전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 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1건	500	

행 정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기 준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3.-----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소관 실·과		징 수 과
입 안 자	과 장	배 영 숙
	담 당	차 인 숙
	담 당 자	서 윤 지 (480-6893)